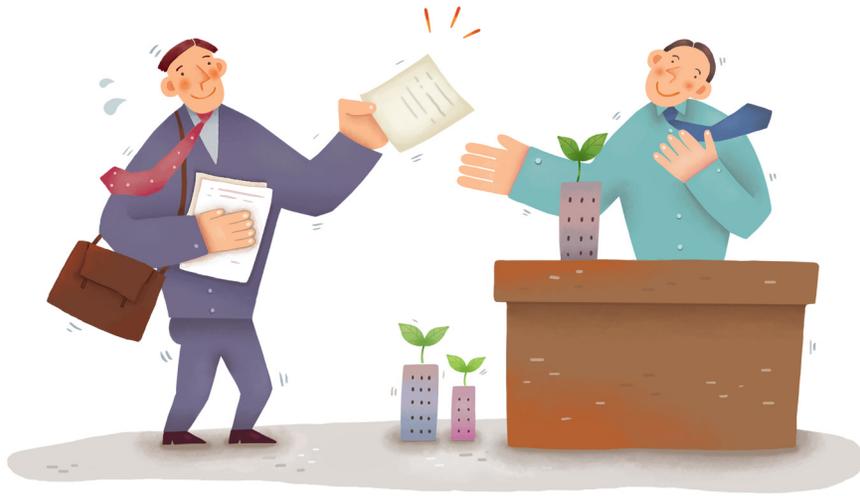


하도급사 보호를 위한

#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



기획재정부는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의 경우 공공공사 PQ입찰 시 최고 7점의 감점(중전 3점)을 부과하는 등 건설 하도급사 보호를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했다. 이번 계약예규 개정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에 참여하면서 회원사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건설공사 불공정하도급 거래 방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.[편집자주]

##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

### ■ 개정일 및 시행일

• 개정 · 시행일 : 2012. 7. 9

※ 단, 「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」은 2012. 8. 9부터 시행

### 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요령 개정

- 불공정 하도급거래 업체 불이익 강화(별표2)
  - PQ · 적격심사 시 하도급법 상습위반 등 불공정 하도급업체에 대한 감점기간 및 감점

수준을 확대하여 불공정 하도급관행 근절

현행	개정
최근 1년 동안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 및 하도급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~3점 감점	최근 2년 동안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 및 하도급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7점 감점

- 동반성장지수 ·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업체 우대(별표2)
  -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하는 동반성장지

수와 공정위가 평가하는 공정거래협약의 평가 결과 우수한 기업의 경우 2점~1점 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

• **녹색기업 및 녹색건축물 인증보유 업체 우대 (별표2)**

- 녹색기술, 녹색사업인증서,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및 에너지효율·친환경 건축물 2등급 이상 인증실적 보유업체는 PQ·적격심사 시 2점 범위 내 가점부여

■ **공사계약 일반조건 개정**

- **자재·장비대금 지급확인제도 확대(제39조, 제40조, 제43조의2)**

현행	개정
발주기관은 원도급업체의 하도급 업체 및 자재·장비 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	발주기관은 현행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의 자재·장비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여부도 확인

• **현장대리인 상주의무 예외 명시 및 자격요건 명확화(제14조)**

- 공사 중단 시 발주기관 승인으로 현장대리인의 비상주 가능
- 현장대리인 자격요건을 공사관련 법령(건설산업기본법 등)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으로 명시

• **최저가공사 설계변경 시 기준단가 산정방식 변경(제20조)**

현행	개정
발주기관의 요구로 설계변경 시 설계변경 당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	증가된 물량 중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 단가가 최저 수준임을 고려하여 전액 반영

■ **공사입찰 유의서 개정**

- **입찰참가 시 최근 신용평가결과 제출 의무화(제10조의2)**

현행	신설
업체가 신용평가를 여러 번 받고 그 중 자신에게 유리한 평가등급을 임의로 선별·제출할 수 있어 평가의 정확성 저해	업체가 받은 모든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그 중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평가

■ **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**

- **신기술·특허 사용요건 강화(제5조의2)**
  - 적용 가능한 다수 신기술의 경우 1억원 초과 전문공사의 설계에 신기술을 포함하고자 할 때 계약심의회 심의 필요

• **기술협약서 상 하도급대금 기준 명시(제5조의2, 신기술(특허공법)사용협약서제4조)**

- 낙찰자와 신기술 보유자 간 하도급 규정 부재로 분쟁발생
- 신기술 보유자의 시공참여 의무 부여 및 하도급대금\* 산정기준 명시
  - \* 하도급대금은 「(예정가격×낙찰률\*\*) $\times$  82%」를 기준으로 정함
  - \* 낙찰률이 80% 이상인 경우 그대로 적용, 80% 미만인 경우 80%로 적용

